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욱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793
----------	-------

발의연월일 : 2025. 12. 31.

발 의 자 : 정진욱 · 정준호 · 안도걸
조인철 · 박균택 · 양부남
이개호 · 박지원 · 전진숙
오세희 · 서삼석 · 최혁진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신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심사 과정을 살펴보면,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활용 용도에 따라 7개 부처가 개별적인 전문가심사 위원회를 통해 분리 심사하고 있고, 인체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추가로 보건복지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각 부처별로 설치된 전문가심사위원회에 대하여 법률의 근거가 미비하고, 현행 위해성심사 절차가 다양하고 복잡하여 인력과 시간, 비용의 낭비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으며, 위해성심사에 대응해야 하는 신청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어 신규 시장진입 장벽으로까지 작용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신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심사 절차를 ‘위해성심사위원

회'로 일원화함으로써 위해성심사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3 신설 등).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제6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가”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으로, “그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위해성심사 결과 및 그 유전자변형생물체”로 한다.

-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1조에 따른 바이오안전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심사의 기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환경 방출 가능성, 이용 목적 및 후대교배종 여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7조의3(위해성심사위원회)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위해성심사를 하기 위하여 소관 분야 위해성심사위원회(이하 “위해성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 ② 위해성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해성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고, 위원은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유전자변형생물체가 인체, 작물재배 환경, 자연생태계, 수산 환경 및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전문가를 각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1. 인체에 미치는 영향: 보건복지부
2. 작물재배 환경에 미치는 영향: 농림축산식품부
3. 자연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기후에너지환경부
4. 수산 환경 및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해양수산부

④ 그 밖에 위해성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 중 “위해성심사대행기관”을 “위해성심사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한다.

제31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7조의2제4항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심사의 기준·방법 등에 관한 사항

제36조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3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임직원”을 “임직원과 위해성심사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의2(신규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위해성심사) ① · ② (생 략) ③ <u>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해성 심사를 하는 경우 유전자변형 생물체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환경 방출되거나 환경 방출될 우려가 있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u> 1. <u>작물재배 환경에 미치는 영향: 농림축산식품부</u> 2. <u>자연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기후에너지환경부</u> 3. <u>수산 환경 및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해양수산부</u> ④ <u>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 심사의 기준 ·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환경 방출 가능성, 이용 목</u>	제7조의2(신규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위해성심사) ① · ② (현행과 같음) <u><삭 제></u> ④ <u>산업통상부장관은 제31조에 따른 바이오안전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심사의 기준 · 방법, 그</u>

적 및 후대교배종 여부 등을 고려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심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하는 자(이하 “위해성심사대행기관”이라 한다)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제3호의 수산환경 및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위해성심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⑦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제6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심사를 하였을 때에는 그 유전자변형생물체에 관한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에게 알려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환경 방출 가능성, 이용 목적 및 후대교배종 여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삭 제>

<삭 제>

⑦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해성심사
결과 및 그 유전자변형생물체-

-----.

야 한다.

<신 설>

제7조의3(위해성심사위원회)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위해성심사를 하기 위하여 소관 분야 위해성심사위원회(이하 “위해성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위해성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해성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고, 위원은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유전자변형생물체가 인체, 작물재배 환경, 자연생태계, 수산 환경 및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전문가를 각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31조(바이오안전성위원회) ①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출입등
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장
관 소속으로 바이오안전성위원
회를 둔다.

1. · 2. (생략)

<신 설>

4. ~ 7. (생략)

② ~ ⑦ (생략)

제36조(보고 및 검사) ① 관계 중
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국가책
임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
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무소·연구시설·생산
공정이용시설·사업장·보관장
소 등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장비 및 보관상태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관
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국
가책임기관의 장은 유전자변형

— •

제31조(바이오안전성위원회) ①

1. · 2. (현행과 같음)

3. 제7조의2제4항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심사의 기준·방법 등에 관한 사항

4. ~ 7. (현행과 같음)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36조(보고 및 검사) ① -----

생물체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제1호 및 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 또는 시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 3. (생 략) 4. <u>위해성심사대행기관</u> 5. ~ 8. (생 략) ② · ③ (생 략) 제38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기관의 <u>인 직원</u> 및 <u>바이오안전성위원회의</u>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생 략) 2. <u>위해성심사대행기관</u> 3. · 4. (생 략)	----- ----- ----- ----- -----. 1. ~ 3. (현행과 같음) <삭 제> 5. ~ 8.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38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u>인 직원과</u> <u>위해성심사위원회</u>----- ----- ----- ----- ----- -----. 1. (현행과 같음) <삭 제> 3. · 4. (현행과 같음)
---	---